호주의 직장 보건 및 안전: 이주 근로자와 다문화 근로자를 위한 정보

호주에서는 누구나 직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 보건 및 안전법은 근로자의 고용방식 (예: 파견직, 캐주얼)이나 비자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호주의 모든 직장과 문화 집단에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1. 편의시설(예: 깨끗한 화장실과 식수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일할 권리
2. 업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배우고 안전한 업무 수행에 대한 안내를 받을 권리
3. 업무 시작 전에 적절한 장비와/또는 의복을 제공받을 권리 (장비나 의복에 대해 지불할 필요 없음)
4. 직장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는 권리 - 고용주에게는 여러분이 건강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업무로 인해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우려되는 경우, 업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6. 직장에서의 상해나 질병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권리

|  |
| --- |
| 직장 보건 및 안전법에 따라 고용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고용주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1.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인 안전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안전하고 지지해주는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근무지에서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해야](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safety-topic/managing-health-and-safety/identify-assess-and-control-hazards/managing-risks) 합니다.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아무도 다치거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교육, 정보 및 지시사항을 제공하고 여러분이 업무를 이해하고 안전한 업무 수행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근무 시작 전에,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장비나 의복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여러분에게 직장 보건 및 안전에 관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7. 직장에서의 상해나 질병을 보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위험요소가 무엇인가요?
위험요소는 직장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지면보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 (예: 사다리에 올라 선반에 물건을 채우거나 지붕 위에서 일하는 것)
* 전기 작업
* 무겁거나 부피가 큰 짐을 들거나 옮기는 것
* 매우 덥거나 매우 추운 곳에서의 작업
* 큰 소음
* 기계 또는 장비로 작업 (예: 공장에서)
* 화약 약품으로 작업 (예: 청소 작업)
* 장시간 일하거나 힘든 일을 장시간 할 때 (예: 손으로 파내기, 계속적인 정신적 요구나 집중을 요하는 일)
* 오랜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것(예: 많이 움직일 수 없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이 앉아있거나 서있는 것)
* 어색한 자세로 일하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
* 반복적인 동작을 장시간 수행하는 것
* 혼자 일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것
* 유해한 먼지나 입자를 호흡하는 것 (예: 건설 현장에서)
* 따돌림 및 인종차별과 성희롱을 포함한 괴롭힘
* 공격적 행동과 폭력

어떻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역시 직장에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유급 근무 시간에 직장 보건 및 안전 교육에 참여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받은 훈련 내용을 따르십시오.
* 교육 내용이나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 질문하십시오.
* 직장에서 업무 수행의 방법과 시기, 장비나 도구의 안전한 사용법에 관한 고용주의 합당한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 직장에서 발견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알리십시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업무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상사, 매니저 또는 고용주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관하여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보건 및 안전 대표자](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safety-topic/managing-health-and-safety/consultation/health-and-safety-representatives-and-work-groups)(HSR)가 있다면, HSR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HSR은 근무지에서 선출한, 직장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 잘 아는 근로자로, 여러분의 모든 우려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불공정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하여, 노조 대표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특정 산업이나 직종 근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일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인력 파견 기관). 이 두 곳 모두 여러분의 직장 내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우려사항은 두 곳 중한 곳 또는 모두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근무하는 주나 지역의 작업 안전 및 보건 규제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의 목록은 이 문서의 마지막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번역 서비스****

무료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에서 [TIS National (전국 통번역 서비스)](https://www.tisnational.gov.au/)를 찾아보세요. 이 서비스는 연중 무휴 24시간 이용가능하고, 100개 이상의 언어가 제공됩니다.

직장에서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아프게 된 경우,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려 [응급조치를](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safety-topic/managing-health-and-safety/first-aid) 취하게 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의사나 간호사를 만나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찰 받고 싶은 의사나 간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와 기타 비용(예: 일을 쉬는 동안)을 지원받기 위해 산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모든 근로자, 임시 또는 영구 비자를 소지한 이주 노동자를 포함하여 업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보상하기 위한 산재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업자 (자영업자이거나 업무에 대한 호주 사업자 번호(ABN)가 있는 경우)일 경우엔, 일하고 있는 주나지역의 관련 근로자 산재보험 기관에 연락하여 근로자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업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비하여 본인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누가 계약업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전화 13 13 94번으로 Fair Work Ombudsman에 연락하거나[www.fairwork.gov.au](http://www.fairwork.gov.au)/contracto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산재보험은 여러분이 부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산재보험 기관은 여러분, 의사, 고용주와 협력하여 여러분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본인이 일하는 주나 지역의 근로자 산재보험 기관으로 연락하십시오. 이 정보지의 끝부분에 관련 기관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임금과 조건에 대한 권리

호주에는 최저 임금과 근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Fair Work Ombudsman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이러한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Fair Work Ombudsman은 또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임금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Fair Work Ombudsman은 누군가 근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Fair Work Ombudsman은 여러분이 비자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상담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화 13 13 94번이나 [www.fairwork.gov.au](http://www.fairwork.gov.au/)를 통해 Fair Work Ombudsman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직장 보건 및 안전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 도움이나 조언을 얻을 수 있나요?

[이주 근로자 | Safe Work Australia](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safety-topic/managing-health-and-safety/migrant-workers)를 방문하세요. 직장 보건 및 안전 정보 번역본은 [언어 허브 | Safe Work Australia](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language-hub)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안전에 관하여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근무하는 주나 지역의 직장 보건 및 안전 규제 기관이나 근로자 산재보험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전화 통역 서비스에 131 450번으로** 전화하세요.

직장 내 보건 및 안전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노조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조에 연락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전화 1300 486 466번이나 www.australianunions.org.au를 통해 Australian Unions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보건 및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 사항과 관련하여 연락할 수 있는 기관들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  |  |
| --- | --- |
|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규제 기관****고용주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직장 내 안전 및 건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겪은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산재보험 기관****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
| ***뉴사우스웨일즈 주***SafeWork NSW웹사이트: safework.nsw.gov.au이메일: contact@safework.nsw.gov.au전화: 13 10 50 | ***뉴사우스웨일즈 주***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웹사이트: sira.nsw.gov.au이메일: contact@sira.nsw.gov.au전화: 13 10 50 |
| ***빅토리아 주***WorkSafe Victoria웹사이트: worksafe.vic.gov.au이메일: Info@worksafe.vic.gov.au전화: 1800 136 089 (무료전화) | ***빅토리아 주***WorkSafe Victoria웹사이트: worksafe.vic.gov.au이메일: Info@worksafe.vic.gov.au전화: 1800 136 089 (무료전화) |
| ***퀸즈랜드 주***Workplace Health and Safety Queensland, Office ofIndustrial Relations웹사이트: worksafe.qld.gov.au전화: 1300 362 128 | ***퀸즈랜드 주***WorkCover Queensland웹사이트: worksafe.qld.gov.au이메일: info@workcoverqld.com.au전화: 1300 362 128 |
| ***서호주 주***WorkSafe WA웹사이트: commerce.wa.gov.au/WorkSafe/이메일: safety@dmirs.wa.gov.au전화: 1300 307 877 | ***서호주 주***WorkCover WA웹사이트: workcover.wa.gov.au전화: 1300 794 744 |
| ***남호주 주***SafeWork SA웹사이트: safework.sa.gov.au이메일: help.safework@sa.gov.au전화: 1300 366 255 | ***남호주 주***ReturnToWorkSA웹사이트: rtwsa.com이메일: info@rtwsa.com전화: 13 18 55 |
| ***호주 수도 준주***WorkSafe ACT웹사이트: worksafe.act.gov.au이메일: worksafe@worksafe.act.gov.au전화: 13 22 81 | ***호주 수도 준주***WorkSafe ACT웹사이트: worksafe.act.gov.au이메일: worksafe@worksafe.act.gov.au전화: 13 22 81 |
| ***노던 테리토리***NT WorkSafe웹사이트: worksafe.nt.gov.au이메일: ntworksafe@nt.gov.au전화: 1800 019 115 | ***노던 테리토리***NT WorkSafe웹사이트: worksafe.nt.gov.au이메일: datantworksafe@nt.gov.au전화: 1800 250 713 |
| ***태즈매니아 주***WorkSafe Tasmania웹사이트: worksafe.tas.gov.au이메일: wstinfo@justice.tas.gov.au전화: 03 6166 4600 (태즈매니아 외부)전화: 1300 366 322 (태즈매니아 내부) | ***태즈매니아 주***WorkSafe Tasmania웹사이트: worksafe.tas.gov.au이메일: wstinfo@justice.tas.gov.au전화: 03 6166 4600 (태즈매니아 외부) |
| ***연방 정부***호주 연방 정부 기관이나 대형 국영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Comcare 제도에 속할 수 있습니다.***Comcare***웹사이트: comcare.gov.au이메일: whs.help@comcare.gov.au전화: 1300 366 979 | ***연방 정부***호주 연방 정부 기관이나 대형 국영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Comcare 제도에 속할 수 있습니다.***Comcare***웹사이트: comcare.gov.au이메일: general.enquiries@comcare.gov.au전화: 1300 366 979 |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다음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
| --- |
| 임금 및 근로 조건에 관하여 문의하는 경우Fair Work Ombudsman웹사이트: www.fairwork.gov.au전화: 13 13 94따돌림을 당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Fair Work Commission웹사이트: www.fwc.gov.au전화: 1300 799 675성희롱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응급 상황인 경우, 0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경찰 지원 라인 131 444번으로 전화하십시오.직장에서 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하고 불만제기를 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웹사이트: www.humanrights.gov.au전화: 1300 656 419가정 및 가족 폭력 또는 성폭력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전국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 서비스웹사이트: [www.1800respect.org.au](http://www.1800respect.org.au)전화: 1800 RESPECT (1800 737 732) |
| ***거주하는 지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센터나 이민자 및 다문화 지원 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